

時에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修正理由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體育振興協議會 구성에 있어서 同條例 第3條第3項이 되겠습니다.

委員職 委囑에 있어서 地域社會 體育振興에 이바지할 수 있는 管内 공공기관의 장, 企業體 및 기타 團體의 代表者 중에서 議長이 委囑하도록 한 修正案을 냈습니다마는 보다 門戶를 開放해서 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자중 區廳長과 區議會 議長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住民 意見이 收斂되고 反映될 수 있도록 위촉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修正案에 대한 修正案을 보다 알기 쉽게 別添 新舊條文 대비표를 現行 修正案, 修正案 순으로 作成, 添附하였습니니다.

이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구성에 있어서 協議會 議長과 副議長은 修正案대로 그냥 두고 第3項부터 委員을 위촉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生活體育振興協議會 會長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외에 12名에 대한 委員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區廳長과 區議會 議長님께서 추천한 자중에서 議長이 委囑하도록 이렇게 改正하였습니니다.

新·舊條文對照를 상세히 檢討하셔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修正案을 說明드렸습니니다.

麻浦區 生活體育振興協議會 構成과 運營을 보다 效果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區 體育發展에 最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元泰 議員여러분들, 만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朴浩燁 生活體育課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條例 提案에 대한 修正案에 대하여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元泰 議員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請願審査特別委員會 활동으로 11月 19일부터 11月22日까지 4日間 本會議를 休會하고 11月23日 午前10時에 本會議를 開議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께서는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異議가 없으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18分 散會)

○參席議員 (30人)

金元泰	黃泰植	曹熙太
宋潤錫	金星煥	朴炆緒
具又石	韓賢德	金鍾烈
沈載昶	孫龍浩	洪性煥
鄭然宇	金相烈	李康泌
蔡雲錫	尹東鉉	洪吉杓
田炳萬	李仁求	尹正鏞
金裕顯	尹明奎	權五範

○出席公務員

生活體育課長 朴浩燁

〈참 조〉

서울特別市麻浦區體育振興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案

서울特別市麻浦區體育振興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③ 委員은 麻浦區生活體育協議會 會長 및 地域社會 體育振興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의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 또는 體育分野에 學識과 經驗이 있고 獻身의으로 活動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자 중 區廳長과 區議會 議長이 추천하는 자로 의장이 委囑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p>第3條(구성) ① <u>協議會는 議長, 副議長 各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u></p> <p>② <u>議長은 區廳長이 되고, 副議長은 教育에 종사하는 委員中에서 호선한다.</u></p> <p>③ <u>委員은 體育分野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있고, 地域社會 體育振興을 위하여 獻身的으로 活動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자 中에서 議長이 委囑한다.</u></p>	<p>第3條(구성) ① <u>…副議長을 포함한 委員 15人 이내로</u></p> <p>② <u>…副議長은 教育廳教育長 또는 學校長으로 한다.</u></p> <p>③ <u>委員은 麻浦區 生活體育協議會 會長 및 地域社會 體育振興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자 中에서 議長이 委囑하는 자로 한다.</u></p>	<p>第3條(구성) ① (改正案과 같음)</p> <p>② (改正案과 같음)</p> <p>③ <u>委員은 麻浦區生活體育協議會 會長 및 地域社會 體育振興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 또는 體育分野에 學識과 經驗이 있고 獻身的으로 活動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자 中 區廳長과 區議會 議長이 推薦하는 자로 議長이 委囑한다.</u></p>